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5. 3. 24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3. 10. 고병준 의원 외 6명
- 나. 회부일자: 2025. 3. 11.
- 다. 상정일자: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25. 3. 2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고병준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폐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정의를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
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 근거 법령 폐지에 따른 적용법령 수정(안 제9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
- 2)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3) 입법예고 : 2025. 2. 26. ~ 2025. 3. 4. (의견 없음)

3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2020년 4월 2일 폐지되고,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관련 업무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해당 사항이 「대기환경보전법」으로 이관된 점을 반영한 것임.
- 당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폐지된 상황에서 현행 적용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의 구조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

[관 계 법 령]

「대기환경보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6. “저공해자동차”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
 - 나.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